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로저스 Commodity 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1)	-	-
2	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 2 호	2), 5), 6)	-	-
3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 호(주식혼합)	5)	○	○
4	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벤처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5), 7)	○	○
5	미래에셋슬로몬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5)	○	-
6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(분배형)	-	○	-
7	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5)	○	○
8	미래에셋차이나과창판증권투자신탁(주식)	5), 7)	○	-
9	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5)	○	-
10	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)	○	-
11	미래에셋퇴직플랜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)	○	-
12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-
13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)	○	-
14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)	○	-
15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)	○	-
16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5)	○	-

## 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명칭 변경
- 2) 보수 기준 변경
- 3)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6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##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2월 25일 (금)

## 4. 변경 내용:

- 1) 클래스 명칭 변경

[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]

변경 전	변경 후
종류 B [수수료선취 -오프라인]	종류 A [수수료선취 -오프라인]
종류 B-e [수수료선취-온라인]	종류 A-e [수수료선취-온라인]

2) 보수 기준 변경

[투자설명서]

변경 전	변경 후
자산운용관리보수율에 <u>납입금액</u>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	자산운용관리보수율에 <u>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</u>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
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에 <u>납입금액</u>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에 <u>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</u>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

[집합투자기구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보수)	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<u>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연간으로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</u>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<u>판매회사보수는 판매회사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</u>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	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<u>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</u>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<u>신탁업자보수는 신탁업자보수율에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연간으로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</u>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 호(주식혼합)	2	2	18.91	17.26
미래에셋번액보험어드벤처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0.66	0.77
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2	2	15.31	15.26

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 <u>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 ) 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 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 )

	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b>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b>)</p>
--	--	--

6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
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<u>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</u>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##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